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78
----------	-------

발의연월일 : 2026. 9. 15.

발 의 자 : 김용만 · 문진석 · 이기현
김영배 · 양부남 · 박균택
강준현 · 황명선 · 전용기
오기형 · 김 윤 · 박해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책무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각 1명의 상임위원만을 두고 있어, 위원회가 방대한 선거사무와 사무처 조직을 상시적으로 지휘·감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상임인 위원의 겸직을 금지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소속 사무기구를 지휘·감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등).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統轄한다”를 “통할하며 소속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를 지휘·감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副委員長”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常任委員 또는 副委員長이”를 “상임위원(위원 중 재임기간이 가장 긴 위원을 말하고, 재임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말한다) 또는 부위원장이”로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中央選舉管理委員會와 市·道選舉管理委員會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3.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정무직으로서 그 보수는 위원장은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고 위원은 차관급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5條(委員長) ① 各級選舉管理委員會에 委員長 1人을 둔다. <u><후단 신설></u> ② (생 략) ③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그 事務를 <u>統轄</u>한다. ④ <u>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副委員長 1人을 두며 당해選舉管理委員會委員중에서 互選한다. 이 경우 勤務期間, 實費補償 및 委囑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다만,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공직선거법」 第173條(開票所)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하나의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2개이</u>	第5條(委員長) ① ----- -----. <u>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 -----통할하며 소속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를 지휘·감독한다. ④ <u>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부위원장</u>----- ----- ----- ----- ----- ----- ----- ----- ----- -----

상의 開票所를 설치하는 경우
의 選舉管理를 위하여 第4條
(委員의 任命 및 위촉)第3項의
委員定數에 불구하고 開票所마
다 地方法院長 또는 支院長이
추천하는 法官 1人을 당해 區
· 市 · 郡選舉管理委員會 副委
員長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
는 常任委員 또는 副委員長이
그 職務를 代行하며 委員長 ·
常任委員 · 副委員長이 모두 事
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중에서
臨時委員長을 互選하여 委員長
의 職務를 代行하게 한다.

第6條(常任委員) ① 中央選舉管理
委員會와 市 · 道選舉管理委員
會에 委員長을 補佐하고 그 命
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事務를
監督하게 하기 위하여 각 1人
의 常任委員을 둔다. 다만, 선
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

⑤ -----
-----상임위원(위
원 중 재임기간이 가장 긴 위
원을 말하고, 재임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말한다) 또
는 부위원장이-----

-----.

第6條(常任委員) 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

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생략)

③ 市・道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당해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고 選舉 및 政黨事務에 관한 識見이 풍부한 者중에서 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指名하되 常任委員으로서의 勤務上限은 60歲로 한다.

1. 法官・檢事 또는 辯護士의 職에 5年이상 근무한 者

2. 大學에서 行政學・政治學 또는 法律學을 담당한 副教授 이상의 職에 5年이상 근무한 者

3. 3級이상 公務員으로서 2年이상 근무한 者

<신 설>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第12條(委員의 待遇) ① (생 략) ② <u>中央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政務職으로 하고 그 보수는 國務委員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市·道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u> ③ (생 략)	<u>의 직</u> <u>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u> <u>의 직</u> <u>3.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u> 第12條(委員의 待遇) ① (현행과 같음) ② <u>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정무직으로서 그 보수는 위원장은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고 위원은 차관급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u> ③ (현행과 같음)
---	---